

남 양 주 시 보

제1877호

남양주시 고시 제2020-435호

별내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우리 시 별내동 865번지 일원 도시지원15BL 조성함에 있어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완화차로 확보를 위한 별내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을 (경미한)변경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 신도시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2020. 11. 19.

남양주시장

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: 변경없음

② 토지이용 및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1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교통시설 : 변 경

(1) 도 로 : 변 경

■ 도로 총괄표

남 양 주 시 보

제1877호

■ 도로 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(m)				면적(m ²)				기점	종점	사용형태	주요과지	최초결정일	비고	
	등급	류별	번호	폭(m)		합계	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합계	1단계	2단계							3단계
기정	대로	2	1	32.5	주간선도로	(1,751)	-	(1,751)	-	-	(65,585.2)	-	(59,697.8)	-	(5,887.4)	대로 1-2	별내동 산 209-7도	일반도로	구고28호 (95.6.5)	()는 지구내
변경	대로	2	1	32.5	주간선도로	(1,751)	-	(1,751)	-	-	(65,633.9)	-	(59,697.8)	-	(5,936.1)	대로 1-2	별내동 산 209-7도	일반도로	구고28호 (95.6.5)	()는 지구내

주) 기정 사항은 "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도서[남양주고시 제2019-470호 (2019. 11. 21)] 상의 계획 내용임

주) 금회 완화차로 계획에 따라 일부 도로면적 증가(48.7m²) 사항에 대해서는 4단계 면적 반영

■ 도로 변경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대로 2-1	대로 2-1	▶ 완화차로 확보에 따른 일부 구간 선형변경 및 도로면적 증가	▶ 남양주 별내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지원시설용지 (지원15블럭) 내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위한 진입완화차로 (L=32.0m) 확보 계획에 따른 도로 일부 구간 면적 (48.7m ²) 증가

③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1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.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(도시지원시설) : 변경

구분	가구				획지				비고		
	가구번호	면적(m ²)			획지번호	위치	면적(m ²)				
합계		1단계	2·3단계	4단계			합계	1단계	2·3단계	4단계	
기정	합계				-	-	174,493.8	46,536.2	-	127,957.6	
변경	합계				-	-	174,445.1	46,536.2	-	127,908.9	
기정	지원1	12,986.1	-	-	12,986.1	1	남양주시	12,986.1	-	-	12,986.1
변경	5	12,937.4	-	-	12,937.4	1	별내동 865대	12,937.4	-	-	12,937.4

주) 기정 사항은 "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도서[남양주고시 제2019-470호 (2019. 11. 21)] 상의 계획 내용임

주) 금회 변경은 지원 15에 한함 [완화차로 계획에 따른 면적(48.7m²) 감소]

■ 변경사유서

남 양 주 시 보

제1877호

도면 번호	위 치		변 경 내 용	변 경 사 유
	가 구	획 지		
지원 15	15	1	○ 완화차로 설치에 따른 면적 감소 - 면적 : 12,986.1㎡→12,937.4㎡ (감 : 48.7㎡)	○ 지원15블럭 내 지식산업센터 조성에 따른 진출입로 (대로2-1호선) 변 완화차로 설치계획으로 인한 면적 감소

2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(변경없음)

※ 기타 변경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재 생략

④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도 및 지형도면고시도 : 따로 붙임 (기재생략)